



의안번호	제 2014 - 5 호
의 결 연 월 일	2014. 1. 20. (제54차 정기회의)

의
결
안
건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수정의 건**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1. 의결주문

의안번호 제2013-24호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2. 제안이유

양형위원회는 2013. 12. 23. 제53차 회의에서 공청회 개최계획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을 의결하고 운영지원단으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의결 후 위원회 제54차 회의에서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존 공청회 대상 양형기준안 외에 새롭게 의결된 위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을 추가하여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청회 대상 및 진행 방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별지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I 목적

- 양형기준안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양형기준 심의·의결 과정에 폭넓은 참고자료를 제공
- 양형기준 설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

II 공청회 일시·장소

- 일시 : 2014. 2. 17.(월) 13:30 ~ 18:2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III 공청회 참석자

A 진행 관련

- 인사 말씀 : 양형위원회 위원장
- 공청회 사회 : 상임위원
- 개회식 진행 : 운영지원단장

B 양형기준안 발표자

- 수석전문위원
 - 양형기준안 작성 실무를 담당한 전문위원단을 대표하여 수석전문위원이 양형기준안에 대한 소개를 담당
 - 전문위원 연구성과를 토대로 공청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

C 지평토론자

- 양형기준안 논의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점을 감안하여 양형에 관한 관심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행정부 및 유관기관 간부 등으로 구성
- 양형기준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평토론자는 범죄별로 각 2인으로 구성

IV 공청회 일정

- 개회 선언
- 양형기준안 발표
- 지평토론
- 방청객 질의 및 답변
- 폐회

V 공청회 진행[안]

A 진행 순서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3:30 ~ 13:35	개회식	운영지원단장
13:35 ~ 13:40	인사말씀	양형위원회 위원장
13:40 ~ 14:10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14:10 ~ 15:00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15:00 ~ 15:1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10 ~ 15:25	휴식	
15:25 ~ 15:55	체포·감금·유기·학대,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안(수정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15:55 ~ 16:45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16:45 ~ 16:55	방청객질의 및 답변	
16:55 ~ 17:10	휴식	
17:10 ~ 17:30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17:30 ~ 18:00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18:00 ~ 18:10	방청객질의 및 답변	
18:10 ~ 18:20	마무리 및 폐회	운영지원단장

B 토론 주제

1 대상 기준안

- 위원회 제53차 및 제54차 회의에서 의결된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2 토론 쟁점

-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또는 형량범위의 적정성

-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해야 할 양형인자
- 기타 양형기준 설정 시 참고할 사항

C 발표 및 토론 방식

- 양형기준안 발표 및 지정토론자 토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형기준안 발표자가 준비된 양형기준안을 소개한 후 지정토론자의 토론 진행
- 방청객 질의
사회자로부터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방청객이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질문하고 그에 대해 지정토론자와 전문위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D 기타 사항

- 공청회에서의 발표 및 의견진술 내용은 공청회 주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정
- 공청회 사회자는 공청회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그밖에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